

**『근무혁신 인센티브제』 참여기업 신청 공고(1차)**

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중소·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이끌고 지원하기 위해 「2019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」 참여기업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4. 3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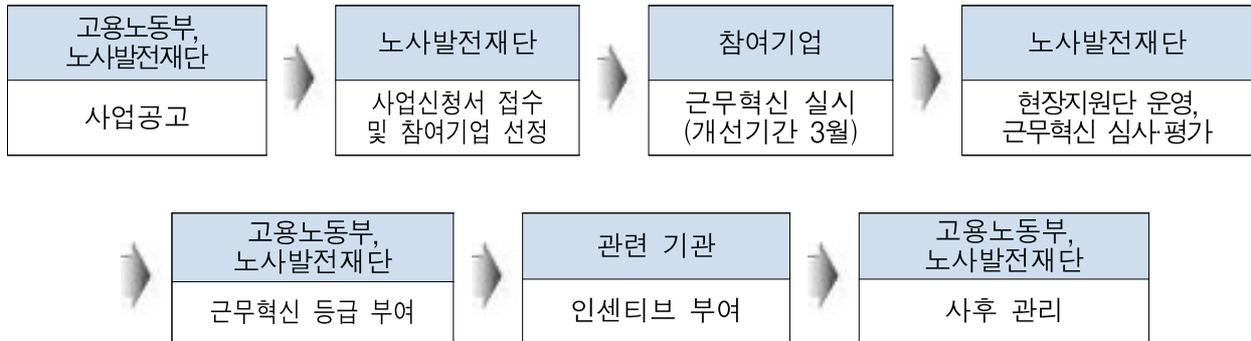
고용노동부장관

**1**

**사업 개요**

- 사업명: 2019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
- 사업목적
  - 일·생활 균형의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,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 유도
  -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,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
- 사업주관: 고용노동부
- 운영기관: 노사발전재단

## □ 사업절차



## 2

###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

## □ 참여대상: 우선지원 대상기업, 중견기업

- △ **우선지원 대상기업:**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서 정한 기업
  - 산업별 기준: 제조업(500명 이하), 광업·건설업·운수업·통신업 등(300명 이하), 도매업·소매업·숙박업·음식점업·금융업·보험업(200명 이하), 그 밖의 업종(100명 이하)
  - 산업별 기준 외: 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, 2.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
- △ **중견기업:**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(www.ahpek.or.kr)에서 발급한 “중견기업확인서”로 확인

## ○ 참여제외대상

- ①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되거나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
- ②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,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
- ③ 최근 3년간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5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
- ④ 2년 연속 동종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(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 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 확인)
- ⑤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, 「관세법」 제116조의2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·단체
- ⑥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·단체
- ⑦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
- ⑧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

## □ 신청기간

- 1차: 2019. 4. 3.(수) ~ 2019. 4. 30.(화)
- 2차: 2019. 5. 20.(월) ~ 2019. 6. 14.(금)

## □ 제출방법: 노사발전재단 방문 또는 우편접수

\* 접수처: (04212)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,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8층 노사발전재단

## □ 제출서류

- 참여신청서, 근무혁신 이행계획서, 근로시간(신청일 직전 3개월간) 등 근무혁신 현황 증빙자료, 중견기업 확인서(해당 기업에 한함),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, 고용보험완납증명원
- \* 참여신청 관련 서식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(www.nosa.or.kr) -[재단소식] - [사업공고]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

# 3

## 참여기업 선정기준 및 결과 발표

## □ 선정기준

- 사업목적과의 적합성, 근무혁신 추진현황, 이행계획의 충실성, 사업주의 의지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이행계획서 심사

심사항목	심사기준	총 점 (100점)
사업목적 적합성	-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	20점
근무혁신 추진현황	- 참여 신청 이전 근무혁신 추진 내용 및 성과 -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 현황	30점
이행계획 충실성	- 근무혁신 계획의 적절성, 실현 가능성, 구체성 - 이행계획 작성의 충실성, 체계성	30점
사업주 의지	-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	20점

## □ 선정결과 발표

- 선정일시: '19. 5월초(예정) \* 2차: '19. 6월말(예정)
- 선정방법: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고

## 4

### 근무혁신 이행 및 우수기업 선정

#### □ 근무혁신 이행

- 개선기간: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승인일로부터 약 3개월  
- 1차: '19.5월~7월, 2차: '19.7월~9월(구체적 일정은 추후 안내)

#### □ 평가 항목

- 초과근로, 유연근무, 연차휴가, 일하는 방식, 일하는 문화 등에 대한 정량 또는 정성 지표로 구성

구분	평가항목	평가지표	점수(1,000점)
정량 (800)	초과근로	①초과근로 현황 ②초과근로 감축	①360점 ②90점
	유연근무	①제도 도입 여부 ②제도 활용정도	①60점 ②140점
	연차휴가	①연차휴가 활용률	①100점
	근로자만족도	①근로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	50점
정성 (200)	초과근로	①정시퇴근 관리체계, ②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보상, ③기타 초과근무 감축 노력 등	50점
	연차휴가 등 휴가	①연차휴가 등 휴가 사용 활성화, ②안식휴가 등 휴가제도 신설, ③휴가 미사용 관리 등	50점
	일하는 방식	①회의방식 변화, ②업무지시·보고방식 변화, ③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, ④업무집중도 향상, ⑤기타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등	50점
	일하는 문화	①관리자의 솔선수범 리더십, ②회식문화 변화, ③기타 일하는 방식 개선 노력 등	50점
가점	①법정의무사항 이상의 일·가정 양립 제도 도입·활용		최대 40점
	②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추천		20점

#### □ 등급 부여: SS, S, A 등 3등급으로 구분

등급	총점(가점 포함)
SS	총 1,000점 중 700점 이상
S	600점 이상 ~ 700점 미만
A	500점 이상 ~ 600점 미만

\* 500점 미만의 기업은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지 않음

#### □ 유효기간: 3년

5

인센티브 지원내용

□ 지원내용

구분	인센티브명	지원내용	소관기관
감독, 조사 면제 등	정기근로감독	3년 면제	고용노동부
컨설팅	일터혁신 컨설팅	심사 우대 및 절차 간소화	고용노동부
정부 조달· 용역 등 우대	병역지정업체 추천	병역지정업체 추천 심사 시 가점 1점	병무청
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	고용장려금 지원 사업	사업계획서 심사 시 가점 5점	고용노동부
	산재예방시설용자금 지원 사업	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 가점 5점	고용노동부
	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	우선 지원	고용노동부
	대·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지원	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 2점	산업통상자원부 *’20년 적용
	스포츠용품 해외 인증 획득 지원 사업	지원기업 선정 시 가점 3점	문화체육관광부 *’20년 적용
스포츠기업 해외전시 지원 사업 선정 우대	정책부합도 7점 부여	문화체육관광부	
기업 홍보	기업정보 제공 경로 확대	워크넷 내 홍보 (기업현장탐방기 등)	고용노동부
	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	근무혁신 등급 관련 사항 포함	금융위원회
	근무혁신 우수기업 표지(마크)	등급별 표지(마크) 부여	고용노동부
정부 포상	고용노동행정유공 장관표창	선정 시 우대 (SS등급)	고용노동부

○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 표지(마크)



## 6

## 사업 추진일정

구 분	추진일정	비 고
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신청접수	1차: 4.3 ~ 4.30 2차: 5.20 ~ 6.14	•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
심사 및 참여기업 선정	1차: 5월 중 2차: 6월 중	• 서류심사 및 사전검증
선정공고	1차: 5월 2차: 6월	•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공지
현장지원단 운영	4월~10월	• 기초상담(컨설팅), 근무혁신 이행확인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
근무혁신 이행	1차: 5월 ~ 7월 2차: 7월 ~ 9월	• 근무혁신 이행계획에 따른 실천 • 참여기업별 3월간 진행
이행실적보고	1차: 8월 2차: 10월	• 근무혁신 이행실적보고서 제출
근로자 만족도조사	8월, 10월	• 참여기업 근로자 대상 만족도조사
근무혁신 평가	1차: 8월 2차: 10월	• 근무혁신 이행실적평가에 따른 등급부여
근무혁신 우수기업 사례집 제작	8월 ~ 12월	• 근무혁신 실천사례를 담은 사례집 제작
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기념식	11월	•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

※ 추진상황 및 업무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

## 7

## 기타사항

-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'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 매뉴얼' 참고
- 문의처: 노사발전재단 일문화개선팀(02-6021-1206, 1207)